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진중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진중오 · 서천호 · 엄태영
고동진 · 김용태 · 김상훈
김소희 · 정연욱 · 박수민
박정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시·도지사 등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,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,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면 문화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.

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6항 신설)

등).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,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7조 중 “제35조제1항”을 “제35조제1항·제6항”으로 한다.

제74조제2항 전단 중 “제35조제1항”을 “제35조제1항·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03조제4항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5조제6항(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된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허가사항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5조(허가사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,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
제47조(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)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<u>제35조제1항, 제37조, 제39조, 제40조제1항(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), 제40조제2항, 제42조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.</u>	제47조(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) ----- ----- <u>제35조제1항·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74조(준용규정) ① (생략) ② 시·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·제4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, <u>제35조제1항</u>, 제36조, 제37조, 제40조,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, 제48조,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유산청장”은 “시·도지사”로, “대통령령”은 “시·도조례”로, “국가”는 “지방자치단체”로 본다. 제103조(과태료) ①·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u><신설></u> 1. ~ 8. (생략) ⑤ (생략)	제74조(준용규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5조제1항·제6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03조(과태료) ①·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<u>제35조제6항(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</u> 2. ~ 9. (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--	--